

2019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LG 디스플레이(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 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내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

I. 개요.....	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5
1. 기업지배구조 정책	5
(1)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5
(2) 당사 지배구조의 특징	6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6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6
3)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	7
2. 주주	8
(1) 주주의 권리	8
1) 주주총회 개최 내역 및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제공.....	8
2)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등 행사	9
3) 주주제안 관련 사항.....	11
4) 종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	12
5) 배당과 관련한 주주의 권리.....	13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5
1) 공평한 의결권 보장, 주주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및 주식발행 현황	15
2)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	19
3. 이사회	22
(1) 이사회 기능	22
1) 이사회의 기능, 제도 및 심의·의결사항	22
2)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향후 계획	26
3) 내부통제정책 전반 관련.....	27
(2) 이사회 구성	29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	29
2)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등.....	31
3)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	34

4) 임원의 현황 및 선임 정책.....	36
(3) 사외이사의 책임	38
1) 사외이사와 당사 간의 이해관계 여부	38
2)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39
3)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원 조직	41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43
1) 사외이사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43
2) 사외이사의 보수	44
(5) 이사회 운영	45
1) 이사회 정기적 개최 및 이사회 운영 규정	45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현황 및 이사별 활동 내역.....	47
(6) 이사회 내 위원회	50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현황	50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51
4. 감사기구	53
(1) 내부감사기구	53
1)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53
2) 내부감사기구의 활동 내역 등.....	56
(2) 외부감사인	60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	60
2)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소통	62
5. 기타 주요 사항	64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65

I. 개요

▶ 기업명 : LG 디스플레이(주)

▶ 작성 담당자 : (정) 김희연 상무 (부) 안명운 책임

▶ 작성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기업 개요

최대주주등	LG전자(주) 외 1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37.90%
		소액주주 ¹⁾ 지분율	49.26%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디스플레이 (OLED, LCD)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미해당
기업집단명	엘지		
요약 재무현황 (단위: 억 원)			
	2019년	2018년	2017년
연결 매출액	234,756	243,366	277,902
연결 영업이익	(13,594)	929	24,616
연결 계속사업이익	(28,721)	(1,794)	19,371
연결 당기순이익	(28,721)	(1,794)	19,371
연결 자산총액	355,746	331,757	291,597
별도 자산총액	273,827	270,621	254,094

1) 1% 미만 지분 보유 주주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1)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산업의 구조에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내규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경영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구분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사 7명 중 4명)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위원의 3분의 2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하는 '다양성의 원칙' 하에서 사외이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각각 산업 기술 전문가, 산업 정책 전문가, 재무·회계 전문가, 기업 경영 전문가 등에 해당하며, 다양한 인적 배경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사무국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개최 전 이사에 대한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사 및 감사위원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에 부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결의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이사회의 감독 하에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고양하고 있으며,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정도경영을 추진하는 등으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최적화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당사 지배구조의 특징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에 관해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으로서, 사내이사 2인, 기타 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 등 총 7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다각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3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원 3인 중 2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재무제표 점검 보고, 내부감사 업무 보고 안건을 심의하는 등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채 발행, 해외 자회사·지점·공장의 설치 등의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결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경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은 위 통지에 더하여 결의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각각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분화된 기능을 자율적·집중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이사회의 각 위원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

당사의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재무·회계 전문가, 당사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정책 분야의 교수, 리더십 및 기업 경영 전문가로서, 당사 내부의 엄격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사외이사의 역량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 사무국, 감사위원회 사무국 및 관련 부서들을 통해 사외이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개최 전 사전보고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당사 사업의 현황, 당사가 속해 있는 산업 분야의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LG그룹 차원의 세미나를 통해 이사의 역할과 책임 전반에 대해 이해를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당사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회사 조직, 사업 현황, 사업 목표 및 전략, 이사회 운영 현황 등 회사의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개최 내역 및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제공

가. 주주총회 개최 내역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 공고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시 개최합니다.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①-1]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

구분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0년 2월 26일	2019년 2월 21일	2018년 2월 20일
소집공고일		2020년 2월 27일	2019년 2월 21일	2018년 2월 21일
주주총회개회일		2020년 3월 20일(금)	2019년 3월 15일(금)	2018년 3월 15일(목)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22일 전	주총 22일 전	주총 22일 전
개최장소/지역		러닝센터/경기 파주	게스트하우스/경기 파주	게스트하우스/경기 파주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주주총회 소집공고,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외국인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당사 홈페이지에 국/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사항 공지, 미국 공시 진행		
세부 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여부	7명 중 2명 출석	7명 중 3명 출석	7명 중 3명 출석
	감사위원 출석 여부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내용	1) 발언주주: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 찬성	1) 발언주주: 개인 주주 9명 및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개인 주주) 배당, OLED 전략, 향후 수익성 - (다수 주주) 안건 찬성	1) 발언주주: 개인 주주 5명 및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개인 주주) 배당, OLED 사업, 투자 전략 - (다수 주주) 안건 찬성

나.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관련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의 약 3주 전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 1% 초과 주주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아울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후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의 편의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안건 설명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인 주주총회 2주 전 대비 1주 빠른 3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확인과 검토, 의결권 행사 전반의 프로세스 등에서 주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ADR 상장사인 당사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일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일정(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가능일 고려)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지만, 향후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등 행사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여부

당사는 통상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 개최를 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개최된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 한하여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상의 주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 1-②-1] 주주총회의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여부 등

구분	제35기 주주총회	제34기 주주총회	제33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0.03.13 2020.03.20 2020.03.27	2019.03.22 2019.03.27 2019.03.28 2019.03.29	2018.03.23 2018.03.29 2018.03.30
정기주주총회일	2020.03.20	2019.03.15	2018.03.15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아니오	예	예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는 현재 일부 상장 법인들이 도입하고 있고 이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으로, 당사도 이러한 입법 진행 추이와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시행 착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면투표제도 역시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면투표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위임을 위해 필요한 참고서류와 위임장 용지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자공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게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주주 전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내역 등

금번 2020년 3월 20일 개최된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는 표결 결과 모든 안건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표 1-②-2]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정기		제35기 주주총회				2020.3.20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35기('19.1.1~'19.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	가결	357,815,700	250,498,360	242,814,995	
						(96.9%)	
						7,683,365	

		인의 건 (※ 현금 배당 하지 않음)				(3.1%)
제2호 의안	보통	- 제2-1의안 정호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357,815,700	250,498,360	241,204,885
						(96.3%)
						9,293,475
		- 제2-2의안 서동희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357,815,700	250,498,360	(3.7%)
						247,130,716
						(98.7%)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57,815,700	250,498,360	3,367,644
						(1.3%)
						247,728,325
						(98.9%)
						2,770,035
						(1.1%)

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활용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며, 실제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바,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주제안 관련 사항

가. 주주제안권 관련 사항

주주제안권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써, 법으로 규정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의 6주 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 평균적으로 주주총회 3~4주 전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된 주주제

안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총회 상정 안건의 심의와 표결을 진행하는 본 행사 외에 주주들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전략 설명회, 당사 제품 전시장 및 생산시설 참관, 소액주주와의 간담회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주주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이후 매년 2회 소액주주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회사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소액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렴된 주주들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주주 제안사항의 채택 가능 여부와 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적은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주제안권의 용이한 행사 가능 여부

상기에서 기술하였듯이 당사는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이러한 활동이나 주주제안권의 행사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하고 그에 관한 자유로운 질의 및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내부 이사회 운영 절차, 그리고 주주총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

가. 배당정책, 향후 배당계획 및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내부 Cash Flow 관리와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가능 여부 및 적정 수준의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에서 이익배당과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에 대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의 충분한 안내 여부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배당에 관한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이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금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5) 배당과 관련한 주주의 권리

가. 주주환원 관련 사항

당사는 2014년 이후 액면 대비 10%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순이익 기준으로 15~20%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OLED로의 사업구조전환을 위한 투자집행의 우선순위결정, 산업 내 경쟁심화에 따른 순이익 축소 및 적자전환 등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하여 2018년과 2019년에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배당성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당사는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며,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아래 "[표 1-⑤-1]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⑤-1]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

(주, 원, 억 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총배당금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연결기준	개별기준
2017	12	보통주	-	500	1,789	1.7%	9.9%	10.1%
		우선주	-	-	-			
2018	12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2019	12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1) 시가 배당률(주당 배당금/주가) 계산 시 주가는 연말 종가 기준임['17.12.28 (29,900원), '18.12.28 (18,050원), '19.12.30 (16,250원)]

2) 현금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분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백분율 (연결/개별 기준)

나.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 여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액면 대비 10% 수준, 순이익 기준 15~20% 수준의 배당성향으로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근 2년간은 부득이하게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는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향후 조속히 사업의 안정화를 이루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주주들이 보다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공평한 의결권 보장, 주주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및 주식발행 현황

가. 공평한 의결권 보장 및 충분한 기업정보 적시 제공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사 정책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한다.

둘째,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수주주권의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셋째,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넷째,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 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이에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발행가능 주식 현황, 기 발행주식 현황, 발행된 종류주식 현황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사 정관에 의해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인데,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57,815,700주로, 모두 보통주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보통주 1주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으며, 감자나 이익소각 등으로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은 없습니다. 당사의 주식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①-1] 주식 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 주식 수 ¹⁾	발행주식	비고
보통주	500,000,000	357,815,700	-
종류주(우선주)	-	-	-

1) 2019년 12월 31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전반과 관련한 사항

□ IR 개최 현황

당사는 실적 및 회사 비전에 대한 설명을 실적발표 행사를 통해 외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점은 매분기 결산 후인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실적발표 행사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2016년 1분기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컨퍼런스 콜 방식으로 변경·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 편의를 위하여 한영문 순차 통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종료 이후에도 당사 홈페이지(www.lgdisplay.com)에서 재청취가 가능하며, 실적발표 IR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재무정보 역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적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지 못한 주주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실적발표 자료 및 재무제표 등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 배려 측면에서 실적발표 안내 이후 홈페이지에 소액주주 문의사항을 사전에 취합하고, 당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의 문의사항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최대한 표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정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KOSPI 외 NYSE DR 상장사로서 분기 결산 이후 실적발표일 전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Quiet Period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실적발표 이후 당사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은행 등 다양한 Stakeholder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NDR(Non-Deal Roadshow, 기업설명회)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국내 및 해외 다수의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1대1, 그룹 미팅, 대규모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유명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기업 프레젠테이션, 전략적 제품 전시 병행 등 다양한 형식으로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 평균 약 500여 회의 IR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IR 활동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주요 IR 활동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2-①-2] 주요 IR, 컨퍼런스 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구분	일자	이벤트	대상	형식	주요내용
IR 정기행사 (실적발표 및 주주총회)	'19.01.30	'18.Q4 실적발표	전체	IR 컨퍼런스콜	분기·연간 실적발표 및 사업 주요 현황 (사업 현황 및 전략)
	'19.04.24	'19.Q1 실적발표			
	'19.07.23	'19.Q2 실적발표			
	'19.10.23	'19.Q3 실적발표			
	'20.01.31	'19.Q4 실적발표			
	'20.03.20	제35기 주주총회			
	'20.04.23	'20.Q1 실적발표			
NDR 및 DR	'19.02.11~15	국내 NDR	국내기관	1:1 혹은 그룹미팅, 그룹 키노트 혹은 프레젠테이션	실적, 회사/재무 현황 및 사업 전략 등
	'19.04.26~30	국내 NDR	국내기관		
	'19.07.24~26	국내 NDR	국내기관		
	'19.08.21~24	해외 NDR	해외기관		
	'19.10.28~29	국내 NDR	국내기관		
	'20.02.04~06	국내 NDR	국내기관		
	'20.04.27~29	국내 NDR	국내기관		
	'20.05.06~14	해외 NDR	해외기관		
Conference	'19.01.07~08	Nomura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01.13~17	DB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02.21~22	JP Morgan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03.20~22	ML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03.26~31	CS Asian Investment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05.16~17	삼성증권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06.24~25	UBS Korea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09.02~06	Citi New York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09.02~05	ML Japan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09.03	CS Korea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11.20~22	MS Asia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19.12.10~12	UBS Global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20.01.07~08	Nomura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20.01.08	Daiwa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20.01.09	UBS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20.05.27	Daiwa Global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20.05.28	Virtual Regional Tech Conference	국내/해외기관		

* '19년 국내 IR Meeting 포함 총 481회 투자자 활동 진행

□ 기업정보 공개 현황

당사 관련 정보는 당사의 국·영문 홈페이지(<http://www.lgdisplay.com>)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서 당사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국·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과 이사회 운영현황 등의 경영정보와 주식 및 주주현황, 재무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미국 동시 상장회사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기적으로 당사의 정기보고서[분기 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Form 20F(연차보고서) 등] 및 주요사항 공시, 분쟁광물 공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시 현황

당사는 2019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하여 제출한 공시는 35건이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53건의 공시를 진행하였으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표2-①-4]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내용
'19.01.30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18년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19.04.24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19년 1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19.07.23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19년 2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19.10.23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19년 3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01.31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19년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04.23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0년 1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라. 기업 정보 적시·적정 제공 여부

당사는 상기 기재한 다양한 IR 활동, 공정공시 진행 및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당사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2)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상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을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주요주주 및 그 자회사 등과의 거래, 그리고 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법령상의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와의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는 엘지(LG)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해당 거래 발생 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②-1]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USD 백만불)

법인명	관계	채권자	목적	보증계약 체결일	거래내역(잔액)			
					기초	증가	감소	기말
LG Display	계열	BNP Paribas Singapore Branch. 외	시설자금	2016.12.19	92	0	30	62

Vietnam Haiphong Co., Ltd	(종속) 회사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외	시설자금	2017.03.07	395	0	0	395
					5	0	0	5
		Standard Chartered Singapore Bank Branch.	시설자금	2018.03.07	100	0	0	100
		Citi Bank Taiwan Limited	시설자금	2018.03.12	75	0	0	75
		Sumitomo Mitsui BankingCorporation Singapore Branch	시설자금	2018.03.29	100	0	0	100
		한국수출입은행	시설자금	2018.04.23	270	0	0	270
		한국수출입은행	시설자금	2018.04.23	110	0	0	110
		한국수출입은행	시설자금	2018.04.23	20	0	0	20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	시설자금	2019.09.02	0	57	0	57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시설자금	2019.09.19	0	165	0	165
합계			-	-	1,167	222	30	1,359

(나) 이해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 등

(단위: 백만 원)

법인명	상대법인명	관계	거래종류	거래일자	거래일기준	거래대상물	거래목적	거래금액	처분이익(손실)
LG Display Co., Ltd.	LG Display Guang Zhou Co., Ltd	종속 회사	설비자산 매각	2019.01.07 ~ 2019.12.31	매각일자	기계장치 등	Capa증설/생산 효율화 등	18,526	(72)
	LG Display Nanjing Co., Ltd.	종속 회사	설비자산 매각	2019.01.11 ~ 2019.11.14	매각일자	기계장치 등	Capa증설/생산 효율화 등	6,383	(1,588)
	LG Display Vietnam Co., Ltd.	종속 회사	설비자산 매각	2019.01.15 ~ 2019.07.27	매각일자	기계장치 등	Capa증설/생산 효율화 등	11,352	0
	LG Display(China) High-tech, Co., Ltd.	종속 회사	설비자산 매각	2019.01.31 ~ 2019.11.28	매각일자	기계장치 등	Capa증설/생산 효율화 등	14,345	(3,121)
	LG전자(주)	최대 주주	기계장치 매입	2019.11.7	매입일자	기계장치 등	설비 매입	417	0
LG Display Poland Sp. z o.o.	LG Chem Poland Sp. z o.o.	계열 회사	설비자산 매각 등	2019.06.26	매각일자	토지, 건물 등	청산 설비 매각	81,351	8,353

(다) 이해관계자와의 영업거래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영업거래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회사명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내용	거래금액
LG Display America, Inc.	종속회사	매출, 매입 등	2019.01.01~2019.12.31	디스플레이 제품 판매 등	9,425,249
LG Display Japan Co., Ltd.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2,229,830
LG Display Germany GmbH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1,680,870
LG Display Taiwan Co., Ltd.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1,434,267
LG Display Nanjing Co., Ltd.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1,465,169
LG Display Guangzhou Co., Ltd.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2,262,149
LG Display Yantai Co., Ltd.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1,278,150
LG Display (China) Co., Ltd.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1,401,748
LG Display Singapore Pte. Ltd.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1,135,228
LG Display Guangzhou Trading Co., Ltd.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1,181,187
LG Display Vietnam Haiphong Co., Ltd.	종속회사		2019.01.01~2019.12.31		1,283,175
LG전자(주)	최대주주		2019.01.01~2019.12.31		1,316,666

(라)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단위:백만 원)

회사명	관계	계정과목	기초잔액	증가	감소	기말잔액	비고
SK머티리얼즈(주) 외 협력업체	협력업체	장·단기대여금	71,164	35,876	44,590	62,450	상생경영 및 제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3.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기능, 제도 및 심의·의결사항

가. 이사회의 기업운영 중심으로서의 기능

□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사무국은 임원급 1명과 실무진 3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소집 통지, 부의 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관리 및 부의 안건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이사회 개최 전 이사진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설명회를 통해 부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이사진의 코멘트를 반영함으로써 이사회에서 부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국내외 사업장 또는 사업 관련 박람회 방문,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외이사 워크숍을 연 1회 실시하여 사외이사의 당사 운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사회가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상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주요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한 투자·재무 등에 관한 사항, 회사의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집행임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3-①-1]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구분	내용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의 양수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회사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이사회 규모의 설정, 이사회 결원의 보충을 위한 선임, 이사 선출을 위한 후보자 지명, 이사 해임과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주식배당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의 보수총액 ▪ 관련 법령상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단,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및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보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는 제외함)
2.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집행임원 인사 및 보수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재무담당최고임원(CFO) 및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국내 자회사와 출자금 500억 원 초과 해외 자회사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 기업지배구조 기준 및 평가 프로세스의 수립, 기업지배구조 기준의 검토 및 개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 건당 또는 일련의 투자금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시설 및 증설 투자(연간 사업계획 포함 여부 불문) - 위 항목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신규 시설 및 증설 투자에 대한 기존 투자승인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건당 또는 일련의 추가 자본적 지출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순지불총액이 미화 2,000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신규 시설 및 증설 투자를 제외한 건당 또는 일련의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포함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건당 또는 일련의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는 타회사의 주식 및 만기 1년 초과 기타 유가증권(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은 제외)의 취득 또는 처분 - 차입에 관한 사항 - 건당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장기(만기 1년 초과) 차입계약의 체결 - 결손의 처분 - 신주의 발행 - 연간 사채 발행 한도 설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건당 규모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5% 초과 사채의 발행 - 기타 형태의 증권(파생증권 포함)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중간배당 - 다액의 보증행위 - 건당 규모가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보증행위 - 다액의 담보 제공 - 채권최고액이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담보의 제공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4. 이사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사내이사 및 집행임원의 타회사(출자회사 제외)의 임직원 겸임의 승인
5. 기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 여부

당사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에는 상법 등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자율적으로 추가하거나 관련 법상 기준을 강화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주로 당사의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주요 경영사항의 이사회 부의기준을 명확화·세분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경영철학 및 조직구조, 대규모 투자장치산업에 해당하는 당사 사업의 특성, 해당 사항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등에 적합한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며, 특히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3-①-2]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구분	내용	효과
2.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 집행임원 인사 및 보수 - 재무담당최고임원(CFO) 및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국내 자회사와 출자금 500억 원 초과 해외 자회사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기업지배구조 기준 및 평가 프로세스의 수립, 기업지배구조 기준의 검토 및 개정	- 주요 경영 및 재무 사항에 대한 이사회 부의기준의 명확화·세분화 - 당사 조직구조 및 사업특성 등에 맞는 이사회 운영
3.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 건당 또는 일련의 투자금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시설 및 증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경영의

	설 투자(연간 사업계획 포함 여부 불문) - 위 항목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신규 시설 및 증설 투자에 대한 기존 투자승인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건당 또는 일련의 추가 자본적 지출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순지불총액이 미화 2,000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신규 시설 및 증설 투자를 제외한 건당 또는 일련의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포함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건당 또는 일련의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는 타회사의 주식 및 만기 1년 초과 기타 유가증권(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의 취득 또는 처분 ▪ 차입에 관한 사항 - 건당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장기(만기 1년 초과) 차입계약의 체결 ▪ 다액의 보증행위 - 건당 규모가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보증행위 ▪ 다액의 담보 제공 - 채권최고액이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담보의 제공	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 강화
--	---	----------------------------

□ 이사회 권한 위임 관련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은 상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을 개최 1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며,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이 이사회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하도록 하는 등 경영위원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3. (6)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경영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의 효과적 수행 여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사무국의 설치·운영 등 이사회 효과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이사회 규정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법상 의무화된 것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일정 사항을 위임하여 이사회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실적, 전망, 추진과제 등 주요 경영사항을 보고받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서는 시장가격 등 주요 조건의 공정성 심사, 대안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충실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당사의 이사회 관련 제도, 지원조직, 심의·의결사항, 권한 위임사항 등을 고려할 때 당사 이사회는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 즉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내부 통제 정책(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회사의 핵심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다양한 경험과 경영능력을 통해 회사 및 주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복수의 후계자 후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후계자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해 당사의 핵심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해당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그 외에 당사 정관 제29조, 이사회 규정 제5조는 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 시 의장이 미리 정한 이사(의장이 정한 순으로)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① 차순위 집행임원인 이사, ② 기타비상무이사, ③ 사외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 순위 이사가 수인인 경우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3) 내부통제정책 전반 관련

□ 리스크 인식, 관리 등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운영 현황

당사는 내·외부 리스크 요인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기회 손실, 인명 피해, 업무 중단 등 사업환경과 관련된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분석하고,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에 따라 핵심 리스크를 선정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생산 가동 중단, 인적 재난, 정보보안, 생산기반 시설 재해, 정보시스템 장애, 이해관계자 갈등, 환경/보전 등을 위기 대응 영역으로 선정한 다음, 영역별로 인명사고, 산업재해, 전염병, 국가핵심 기술 유출 등을 핵심 리스크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리스크에 대하여 위기 상황 전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준법경영을 위한 정책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하여 상법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및 당사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준법통제업무를 총괄하며, 당사 업무와 임직원들에 대한 준법 점검 및 위법가능성이 있는 업무 프로세스나 행위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준법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법률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위법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법지원인은 매년 상법 및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당사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① 업무와 관련된 영역의 법률/규제 위반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를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리스크 인식/평가 체계”, ② 식별된 리스크를 중심으로 법률/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황 확인/점검 체계”, ③ 현황 확인/점검을 통해 도출된 리스크의 경감을 위하여 관

리적 및 인지도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대응/개선 체계”, ④ 리스크 재식별을 위하여 법률/규제 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 등으로 구성된 준법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를 위한 정책 및 운영 현황

당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대표이사는 매년 1월경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후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년 2월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당사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기한 내 신속한 공시를 통해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 당사 공시책임자 등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정기교육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시 및 관련 제도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신속·정확한 공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경영사항의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공시담당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사항, 투자 및 영업 거래활동 등이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시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공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및 정기 공시사항 발생 시 금융, 회계, 법무, IR 등의 공시 관련 임원 회의체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시의무사항의 공시 누락을 방지하고 적기에 적절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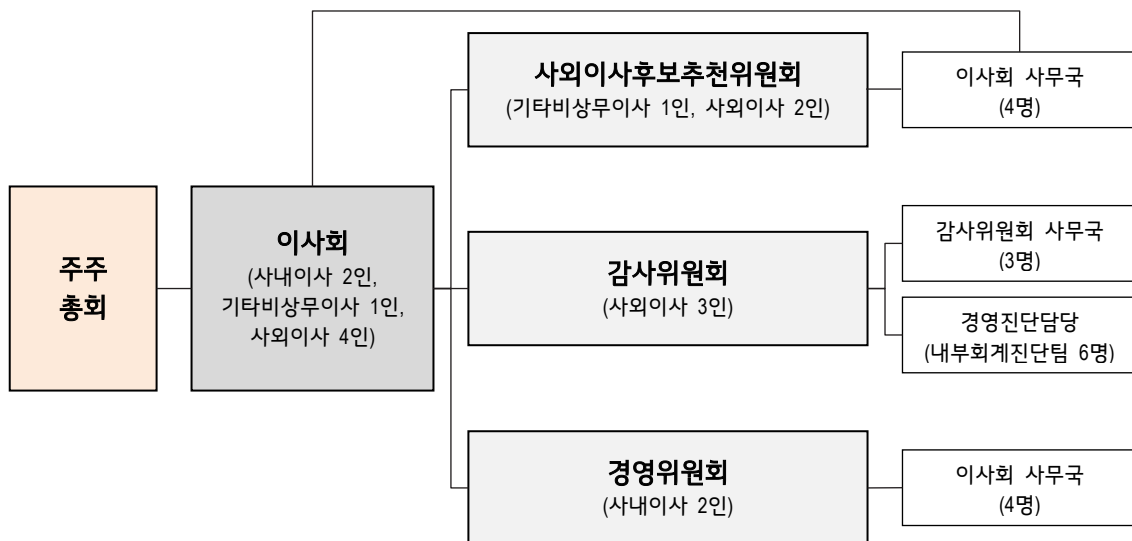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

가. 이사회 구성 현황

□ 이사회 관련 조직 현황

[표4-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 이사회 구성 현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등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은 이사를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함으로써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 이사 및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 등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기능의 강화 및 연속성,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의사결정의 효율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출하며,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세한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4-①1-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4-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직책	중임 여부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일	전문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정호영	대표이사	신임	2020.03.20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기업경영 일반	엘지화학(주) COO 겸 CFO 사장 現 엘지디스플레이(주) CEO 사장
사내 이사	서동희		중임	2019.03.15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기업경영 일반	엘지생활건강(주) 전무 現 엘지디스플레이(주) CFO 전무
사외 이사	황성식	감사위원회 위원장	중임	2015.03.13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회계·감사 (공인회계사)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現 (주)신도리코 부회장
사외 이사	한근태	감사위원회 위원	중임	2016.03.11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기업경영 일반	한국리더십센터 소장 現 (주)한스컨설팅 대표이사
사외 이사	이병호		신임	2018.03.15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산업기술 (교수)	現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사외 이사	이창양	감사위원회 위원	신임	2019.03.15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산업정책 (교수)	現 KAIST 경영대학 교수
비상무	권영수	이사회 의장	신임	2019.03.15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기업경영 일반	엘지유플러스(주) 부회장 現 (주)엘지 부회장

□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주요 역할은 아래 “[표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총 3인) [A]	위원장	사외 이사	황성식	남	-	1. 회사의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 감사 2.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내부 감시장치 가동 현황 점검	
	위원	사외 이사	한근태	남	B		

	위원	사외이사	이창양	남	B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 기타 회사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3인) [B]	위원장	비상무	권영수	남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2.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검증	
	위원	사외이사	한근태	남	A		
	위원	사외이사	이창양	남	A		
경영위원회 (총2인) [C]	위원장	사내이사	정호영	남	-	1. 연간 총 발행 한도 내의 개별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2.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자회사, 지점, 공장, 사무소, 기타 중요시설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	사내이사	서동희	남	-		

나.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및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지 여부

이상과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사외이사 현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고, 7인의 이사 중 4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는바, 당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등

가. 이사회의 현황 및 전문성 등 확보 정책

당사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아가 당사는 이사로 하여금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외에도 회사의 경영활동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전문성, 책임감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이사 선임 시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에 대한 면제 여부 등의 이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LG정도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산업, 금융, 경제경영, 법무, 재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경험을 토대로 회사 가치를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할 자질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으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 1 회 사외이사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워크숍은 외부 회계법인, 당사 임원 등이 주요 사업 현황, 산업 기술 및 당사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정보, 투자 방향, 회계 기준서 변경, 개정 법률에 따른 이사의 역할 변화, 투자자 피드백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사외이사들이 질의 및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 시 국내외 사업장 방문, 디스플레이 관련 전시박람회 참관 등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및 공정,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과 이사진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4-②-1]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사내이사	정호영	2020.03.20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20.03.20	선임	재직
	서동희	2019.03.15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20.03.20	중임	재직
	한상범	2012.03.09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20.03.20	사임	퇴직
	김상돈	2014.03.07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9.03.15	퇴임	퇴직
사외이사	황성식	2015.01.15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8.03.15	중임	재직
	한근태	2016.03.11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9.03.15	중임	재직
	이병호	2018.03.15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8.03.15	선임	재직
	이창양	2019.03.15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9.03.15	선임	재직
	박준	2013.03.30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9.03.15	퇴임	퇴직
	장진	2011.03.09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8.03.14	사임	퇴직
비상무	권영수	2019.03.15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9.03.15	선임	재직
	하현희	2017.03.23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2019.03.14	사임	퇴직

[표4-②-2] 이사진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정호영 (사내이사)	연세대 경영학과 前 LG디스플레이(주) CFO 前 (주)LG생활건강 CFO 前 (주)LG화학 COO 겸 CFO 사장 現 LG디스플레이(주) CEO 사장	권영수 (기타비상무이사)	서울대 경영학과 KAIST 산업공학(석사) 前 LG디스플레이(주) CEO 사장 前 (주)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 前 LG유플러스(주) CEO 부회장 現 (주)LG 대표이사 부회장
서동희 (사내이사)	성균관대 경영학과 前 (주)LG전자 HE경영관리담당 상무 前 (주)LG CNS 정도경영부문장 상무 前 엘지생활건강(주) 전무 現 엘지디스플레이(주) CFO 전무	황성식 (사외이사)	서울대 경영학(학사/석사) KAIST 경영정보공학(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前 (주)삼천리 사장 現 (주)신도리코 대표이사 부회장
한근태 (사외이사)	서울대 섬유공학 美 애크론대 고분자공학(박사) 핀란드 헬싱키대 경영학(석사) 前 대우자동차 이사 前 한국리더십센터 소장 前 서울과학종합대학 교수 現 (주)한스컨설팅 대표이사	이병호 (사외이사)	서울대 전자공학과(학사/석사) 美 UC버클리대 전기공학(박사) 한국광학회 부회장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現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
이창양 (사외이사)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정책학(석사) 美 하버드대 정책학(석사/박사) 前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 前 SK하이닉스 사외이사 現 KAIST 경영대학 교수		

나. 이사회 의 경쟁력 확보 여부

당사는 IT, 회계, 경영경제 전문가, 법무, 재무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사내이사 외에, 당사 사업과 관련된 업종(기술, 산업 등)에서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타비상무 이사, 공인회계사 출신의 재무·회계 전문가, 리더십 및 기업 경영 전문가, 산업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바,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이사는 없으나, 향후 여성 이사 등 더욱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이사회로 구성하고 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

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 현황 및 활동 내역

당사는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이사 후보군 중에서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경력 및 실무 경험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해당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로서 당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점검하여 복수의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전문성, 충실성, 경영마인드,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청렴도 등의 측면에서 회사 경영상황에 적합한지를 심도 깊게 논의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3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 중 1인은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나머지 2인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를 제외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66.7%로 유지하고 있습니다([표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참고).

나. 주주에 대한 이사 후보 관련 정보 제공 현황

당사는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약 3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의 세부 경력, 당사와의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정리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함께 제공하는 한편, 분기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사 선임 여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4-③-1]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상세)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19.02.21 (주총 22일전)	2019.03.15	사내	서동희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약력·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사외	한근태		
		사외	이창양		
		비상무	권영수		
2020.02.27 (주총 22일전)	2020.03.20	사내	정호영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사내	서동희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등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사회 운영의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 정관 제20조(의결권 행사)

- 1) 각 주주의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2)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주주총회개시 전까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당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당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 한다.

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하는 등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더욱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4) 임원의 현황 및 선임 정책

가. 임원 현황

당사는 현재 등기 임원 7명 외 92명의 미등기임원이 재직 중으로, 상세한 임원 현황은 아래 “[표 4-④-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4-④-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정호영	남	1961.11	사장	상근	CEO(대표이사)
서동희	남	1964.02	전무	상근	CFO(재무 담당)
권영수	남	1957.02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
황성식	남	1956.07	사외이사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
한근태	남	1956.10	사외이사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
이병호	남	1964.07	사외이사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
이창양	남	1962.09	사외이사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
최형석	남	1961.10	부사장	상근	IT 사업부장
신상문	남	1959.07	부사장	상근	CPO(생산 담당)
강인병	남	1963.05	부사장	상근	CTO(기술 담당)
하용민	남	1966.12	부사장	상근	Mobile 개발 Group장
김명규	남	1962.12	부사장	상근	Mobile 사업부장
양재훈	남	1963.10	부사장	상근	경영지원 Group장
오창호	남	1965.09	부사장	상근	TV 사업부장

※ 부사장 이상인 주요 미등기임원을 표기한 것이며, 그 외 구체적인 미등기임원 현황은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당사는 임원 선임 전, 해당 후보자의 성과, 리더십, 상사·동료·부하 평가 등 전반적 관점에서의 내·외부 검증 등을 통해 임원 선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임원 선임 및 승진 관련하여 사적 이익 도모, 직무 유기, 업무 태만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

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원을 임원 선임 및 진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 선임 시 집행임원 서약서, 증권거래 규정준수 서약서 등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배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그 혐의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 여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당사 입사 전의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관계로 직접적인 검증은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임원 중 당사 및 계열회사 근무기간 내에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죄판결 또는 혐의를 받은 인원이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관련

당사는 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가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의사결정사항을 집행하며, 다시 이사회가 그 집행사항을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의사결정, 집행 및 감독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와 당사 간의 이해관계 여부

가. 사외이사와 당사 간의 이해관계 여부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나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나 당사의 계열회사는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당사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황성식 사외이사의 경우 아래 [표5-①-1]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거래는 각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위 사외이사가 (주)신도리코에 재직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당사 사외이사의 당사 및 (주)신도리코에의 재직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외이사와 당사 사이의 이해관계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표5-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황성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사외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신도리코는 당사 계열회사(LG CNS)와 통합출력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2019년 98,475,160원(부가세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
한근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병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창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등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당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기능의 강화 및 연속성,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의사결정의 효율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는 6년을 초과하거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각 사외이사별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5-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6년 초과 장기 재직 시 그 이유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황성식	5년 5개월	-	5년 5개월	-
한근태	4년 3개월	-	4년 3개월	-
이병호	2년 3개월	-	2년 3개월	-
이창양	1년 3개월	-	1년 3개월	-

다. 사외이사와 당사 간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당사의 이해관계 회피를 위한 노력

당사는 정관을 통해 관련 법령상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와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혹시 있을지 모를 이해관계를 회피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가. 사외이사 겸직 관련 내부 기준 및 현황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라 당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외이사 결격사유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현황을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해당 회사들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시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당사 사외이사 중 황성식 사외이사와 한근태 사외이사가 각 겸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겸직은 상법 및 당사 내부 기준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표5-②-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황성식 (감사위원)	2015.01.15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주)신도리코 대표이사 부회장	(주)신도리코	대표이사 부 회장	2019.03.01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한근태 (감사위원)	2016.03.11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주)한스컨설팅 대표이사	(주)한스컨설팅	대표	2016.07.~ 현재	비상장
이병호	2018.03.15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	-	-
이창양 (감사위원)	2019.03.15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	KAIST 경영대학 교수	-	-	-	-

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상법 및 당사 내부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점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겸직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사회 참석률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외이사가 종합적인 의사결정, 감독 및 견제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수행함에 영향을 줄 만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관련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당사 경영상황에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원 조직

가.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정책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이사회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사무국은 임원급 1명과 실무자 3인으로 구성되며, 부의 안건의 사전 취합, 법률적 검토, 정리 및 배포, 사후 관리는 물론, 특히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의견 취합 등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회 사무국과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감사위원회 소집 통지, 부의 안건의 사전 취합, 법률적 검토, 정리 및 배포,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회사 조직, 사업 현황, 사업 목표 및 전략, 이사회 운영 현황 등 회사의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도 사외이사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외이사들에게 생생한 현장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시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시찰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으며, 매년 사외이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 사업 현황, 회계 기준서 변경, 산업 기술에 대한 정보, 법률 개정에 따른 이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당사는 정기 이사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전 보고는 사내이사를 제외하고 사외이사들만 참석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임직원 및 이사회 사무국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개최되는 사외이사 워크숍은 사외이사들이 외부 전문가, 당사 관련 임원 등으로부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당사 사업 및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주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논의를 진행하는바, 이러한 사외이사 워크숍 역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정기 회의체에 해당합니다.

이상과 같은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5-③-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회차	정기 /임시	개최일자	출석사외이사 /전체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1차	정기	2019.01.22	1/4	1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1.23	1/4	1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1.24	2/4	1월 이사회 안건 보고	
2차	정기	2019.02.13	1/4	2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2.14	1/4	2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2.15	2/4	2월 이사회 안건 보고	
3차	정기	2019.03.07	1/4	3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3.08	1/4	3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3.11	2/4	3월 이사회 안건 보고	
4차	정기	2019.04.15	1/4	4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4.16	2/4	4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4.17	1/4	4월 이사회 안건 보고	
5차	정기	2019.07.16	1/4	7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7.17	2/4	7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07.19	1/4	7월 이사회 안건 보고	
6차	정기	2019.09.02	4/4	사외이사 워크숍 · 외부감사인 선정 규정안 · 디스플레이 시장 및 경쟁 동향 · 중장기 사업 전략 ·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역할 · 투자자/Analyst의 주요 관심 이슈	
7차	정기	2019.10.15	1/4	10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10.16	1/4	10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10.17	2/4	10월 이사회 안건 보고	
8차	정기	2019.11.19	1/4	11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11.20	1/4	11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19.11.21	2/4	11월 이사회 안건 보고	
1차	정기	2020.01.20	3/4	1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20.01.22	1/4	1월 이사회 안건 보고	
2차	정기	2020.02.17	1/4	2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20.02.18	1/4	2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20.02.19	2/4	2월 이사회 안건 보고	
3차	정기	2020.03.09	1/4	3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20.03.11	1/4	3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20.03.12	1/4	3월 이사회 안건 보고	
4차	정기	2020.04.09	2/4	4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20.04.14	1/4	4월 이사회 안건 보고	
		2020.04.14	1/4	4월 이사회 안건 보고	

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이상과 같은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 조직이나 정도,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사외이사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당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공식적인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부의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충실한 논의를 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활동 평가는 위에서 기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정성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항목을 구성하거나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정량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자체 운영 평가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연 1회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재무 보고 과정에 대한 감독, 내부 및 외부감사인과의 효과적인 관계, 법규 규제 및 내부 규정의 준수, 독립성, 성과 등 총 2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자체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

선사항 또는 제안사항을 감사위원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서의 활동 내용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사외이사의 보수

가. 사외이사 보수 정책 및 지급 현황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수 구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각 영역에서 전문지식과 폭 넓은 경험에서 나오는 정보를 경영진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활동 평가에 따른 별도의 성과급 지급이나 보수연동,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보수의 적정성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범위, 사외이사의 역할 및 활동 내역,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를 적정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사외이사의 보수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사의 정기적 개최 및 이사회 운영 규정

□ 정기 이사회 관련 규정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적어도 12시간 전에는 각 이사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의사정족수는 재임 중인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구성되고, 그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은 이사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사들이 이사회 당일 충분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약 1주 전 안건 자료를 각 이사에 전달하고 그 내용에 대해 대면 보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사들이 결론 도출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 측에 요청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회의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개최 내역

당사는 상기와 같은 체계적인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 총 9회, 2020년 보고서 제출일까지 총 4회 등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7-①-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7-①-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 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보고사항	1. 18년 4분기 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19.01.29	2019.01.22	7/7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결의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가결				
		2. 제34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				
		3. 제34기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4. 제41회 회사채 발행 승인	가결				
		5.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승인	가결				
2차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	정기	2019.02.20	2019.02.13	6/7
		2. 준법통제체제 운영 보고	보고				
	결의사항	1.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가결				
		2.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의안 승인	가결				
3차	결의사항	1. LG트윈타워 임대차 계약 변경 승인	가결	정기	2019.03.15	2019.03.07	7/7
		2. 임원 보수 지급 등 승인	-				
		(1) 이사 보수 집행 승인	가결				
		(2)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	가결				
		(3) 19년 퇴임 임원 자문역 처우 승인	가결				
		(4) 18년 임원 성과급 지급 재원 승인	가결				
		3. 이사회 등 규정 개정 승인	가결				
		4.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가결				
		5.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승인	가결				
		6. 이사회 의장 선임	가결				
4차	결의사항	1. 19년 1분기 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19.04.23	2019.04.17	7/7
		2. 19년 취업 자문역 처우 유지 승인	가결				
		3. 해외 자회사 폐지 승인	가결				
5차	보고사항	1. '19년 2분기 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19.07.22	2019.7.12	7/7
		2. 경영위원회 결의 사항 보고	보고				
	결의사항	1. 사채발행한도 증액 승인	가결				
		2. G10.5 OLED 투자 승인	가결				
		3. 임원 성과급 기준 변경 승인	가결				
		4. '19년 임원 성과급 목표 승인	가결				
		5. '19년 취업 자문역 처우 유지 승인	가결				
6차	결의사항	1. 해외 전환사채 발행 승인	가결	임시	2019.07.30	2019.07.25	6/7
7차	결의사항	1. 집행임원 인사 승인	가결	임시	2019.09.16	2019.09.02	5/7
8차	보고사항	1. '19년 3분기 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19.10.22	2019.10.16	6/7

9차	결의사항	1. 집행임원 인사 승인	가결	정기	2019.11.27	2019.11.20	6/7
		2. P-OLED 신기술 대응 투자 승인	가결				
		3. '20년 사채발행한도 승인	가결				
		4.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가결				
		5.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	가결				
		6. LG 브랜드 사용 계약 승인	가결				
		7. LG트윈타워 임대차 계약 승인	가결				
1차	보고사항	1. '19년 4분기 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0.01.30	2020.01.28	6/7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결의사항	1. 제35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				
		2. 제35기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3.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	가결				
		4. 준법지원인 선임 승인	가결				
2차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	정기	2020.02.26	2020.02.20	6/7
		2.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보고				
	결의사항	1.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가결				
		2.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의안 승인	가결				
3차	결의사항	1. 대표이사 선임	가결	정기	2020.03.20	2020.03.13	7/7
		2.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3. 이사 보수 집행 승인	가결				
		4. 고문 위촉 승인	가결				
4차	보고사항	2020년 1분기 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0.04.22	2020.04.20	7/7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현황 및 이사별 활동 내역

가.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의 작성 및 보존 여부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이사회마다 이사회 사무국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주요 토의내용,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개별 이사별로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원본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의 경우에도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각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 출석 내역, 최근 3개 사업년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

을 공시하여 이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결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7-②-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2019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비고
	개최일자	01.22	02.20	03.15	04.24	07.22	07.30	09.16	10.22	11.27	
사내	한상범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불참	
사내	김상돈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3차 사임
사내	서동희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3차 선임
사외	박준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3차 퇴임
사외	황성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사외	한근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이병호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사외	이창양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3차 선임
비상무	하현희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3차 사임
비상무	권영수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3차 선임

[2020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비고
	개최일자	01.30	02.26	03.20	04.22	
사내	한상범	불참	불참	미해당	미해당	3차 사임
사내	정호영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3차 선임
사내	서동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황성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한근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이병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이창양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비상무	권영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표7-②-2]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 (최근년도)	2018	2017		2019 (최근년도)	2018	2017
한상범	사내	2012.03.09 ~ 2020.03.19	95.8	66.7	100	100	100	100	100	100
김상돈	사내	2014.03.07 ~ 2019.03.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동희	사내	2019.03.15 ~ 현재	100	100	-	-	100	100	-	-
장진	사외	2012.03.09 ~ 2018.03.14	96.2	-	100	88.8	100	-	100	100

박준	사외	2013.03.30 ~ 2019.03.15	95.8	100	87.5	100	100	100	100	100
황성식	사외	2015.03.13 ~ 현재	96.2	88.9	100	88.8	100	100	100	100
한근태	사외	2016.03.11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병호	사외	2018.03.15 ~ 현재	88.9	77.8	100	-	100	100	100	-
이창양	사외	2019.03.15 ~ 현재	100	100	-	-	100	100	-	-
하현희	비상무	2017.03.23 ~ 2019.03.15	92.1	100	87.5	88.8	100	100	100	100
권영수	비상무	2019.03.15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현황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등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고, 경영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현황 및 역할, 구성 현황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표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3명)이 사외이사입니다.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규정보다 엄격하게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의 구성원 중 2명이 사외이사로,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CFO인 사내이사의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경영위원회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적인 경영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필요한 때에 즉시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반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며,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이 이사회로부터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또는 결의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각 이사가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

여 해당 결의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가.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규정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으로 당사 정관 제34조 등과 이사회 및 각 위원회별로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경영위원회 규정)이 있으며, 각 규정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여부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상법,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사항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어느 이사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사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경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각 이사에 대한 통지와는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각 위원회별 개최 내역 및 출석률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각 위원회별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표9-②-2]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8-②-1]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내역(감사위원회의 경우 표 9-②-2에서 작성)

(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i)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19.02.20	3/3	결의사항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ii)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기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년 (최근년도)	2018년	2017년
사외	박준	2013.03.30 ~ 2019.03.15	100	100	100	100
사외	황성식	2015.03.13 ~ 현재	100	-	-	100
사외	한근태	2016.03.11 ~ 현재	100	100	100	-
비상무	강유식	2011.03.11 ~ 2017.03.23	100	-	-	100
비상무	하현희	2017.03.23 ~ 2019.03.14	100	100	100	-

(나) 경영위원회

(i)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19.04.17	2/2	결의사항	안양연구소 지점 폐지 승인의 건	가결
2차	2019.04.23	2/2	결의사항	변동금리부 미달러화표시 사채 발행의 건	가결

(ii)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기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년	2018년	2017년
사내	한상범	2012.03.09 ~ 2020.03.20	100	100	100	100
사내	김상돈	2014.03.07 ~ 2019.03.15	100	-	100	100

4.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가.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 구성,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

□ 내부감사기구 구성

당사는 상법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 전문가, 기업경영 전문가, 산업정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9-①-1] 내부감사기구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황성식	공인회계사[1979년 취득, 삼일회계법인(1977년~2004년 근무)] 교보생명보험(주) 감사위원(2016.03.24 ~ 2020.03.28)	회계·재무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한근태	-	기업경영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이창양	SK하이닉스(주) 감사위원(2012.02.13 ~ 2018.03.28)	산업정책 전문가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고, 또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표9-①-2] 내부감사기구 선정 요건

후보자 선정 요건	총족 여부	관련 법령 등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총족(3명)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사외이사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총족(전원 사외이사)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	총족(전원 사외이사)	정관 제36조의2 제2항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총족(황성식 1인)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총족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총족(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나.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기구 운영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 구성요건(전원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감사위원회의 회계 및 업무 감사권한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주요 부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9-①-3]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구분	내용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회 보고 -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 회사(자회사 포함)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가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사의 보고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제기 시 회사의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의 결정여부 - 회사 재무제표의 검토[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고 한다)의 감사 또는 검토를 필한 연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의 공시 전 검토 포함] -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 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요청 - 감사인의 보수와 감사계약 및 독립성과 자격요건에 관한 검토 - 감사인과 이사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조정 -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회사의 준법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각종 공시 및 신고 의무 준수 여부 검토 ▪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
5.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검토 및 윤리규정의 정기적 검토·수정·보완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현황 및 외부전문가 자문 지원 등

당사는 연 1회 워크샵, 분기 1회 재무제표 해설, 신입 감사위원 대상 교육 등을 감사위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9-①-4] 감사위원회 교육현황

교육일자(시간)	교육실시주체	교육 내용
2019.01.29 (30분)	삼정회계법인	2018.4분기 재무제표 해설
2019.04.15 (3시간)	회사	(신임 감사위원 대상 교육) LG디스플레이 조직 소개, LCD/OLED 생산 공정, 사업 현황, '19년 사업 목표 및 전략, 내부회계관리제도
2019.04.23 (30분)	삼정회계법인	2019.1분기 재무제표 해설
2019.07.22 (30분)	삼정회계법인	2019.2분기 재무제표 해설
2019.09.02 (4시간)	회사,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인 선정 규정안, 디스플레이 시장 및 경쟁 동향, 중장기 사업 전략,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역할, 투자자/Analyst의 주요 관심 이슈
2019.10.22 (30분)	삼정회계법인	2019.3분기 재무제표 해설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정보·비용 지원 등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실무경력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사부서인 경영진단담당(내부회계진단팀 6명)이 있습니다. 경영진단담당은 감사위원회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 평가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점검을 통한 평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활동 결과를 직접 보고하고 있어, 당사의 내부감사부서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경영 정보 접근성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보수정책

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의 “3.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이상과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그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실무경력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내부감사기구의 활동 내역 등

가. 감사기구 감사 활동 및 외부 감사인 선임 내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 내부감사기구 감사 활동 등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19년 총 6회, 2020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 개최되어, 각종 감사 활동,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수행하였고, 감사위원들은 해당 기간 감사위원회에 전원 출석하여 충실하게 토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9-②-1] 감사활동 내역 등

구분	개최일자	내용
감사활동	2019.01.29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2019.04.23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2019.07.22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2019.10.22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2020.01.30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2020.04.22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2019.11.27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019.02.2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020.02.2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표9-②-2]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19.01.29	3/3	보고사항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018년 4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제34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018년 4분기 재무제표 점검 보고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보고
				감사위원회 자가평가 결과 보고	보고
				제34기 영업보고서 보고	보고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가결
2차	2019.02.20	3/3	보고사항	준법통제체제 운영 보고	보고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검토 보고	보고
				제34기 재무제표 점검 보고	보고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평가	가결
				2018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결

3차	2019.04.23	3/3	보고사항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보고
				2019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019년 1분기 재무제표 점검 보고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보고
4차	2019.07.22	3/3	보고사항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보고
				2019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019년 2분기 재무제표 점검 보고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보고
5차	2019.10.22	3/3	보고사항	외부감사인에게 의한 감사 관련 용역 승인	가결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보고
				2019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019년 3분기 재무제표 점검 보고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평가 보고	보고
6차	2019.11.27	3/3	결의사항	외부감사인에 의한 비감사 용역 승인	가결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 제정 승인	가결
1차	2020.01.30	3/3	보고사항	외부감사인 선정	가결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용역 승인	가결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019년 4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제35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019년 4분기 재무제표 점검 보고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보고
				감사위원회 자가평가 결과 보고	보고
2차	2020.02.26	3/3	결의사항	제35기 영업보고서 보고	보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비감사 용역 승인	가결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검토 보고	보고
				제35기 재무제표 점검 보고	보고
3차	2020.04.22	3/3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평가	가결
				2019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결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보고
3차	2020.04.22	3/3	보고사항	2020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2020년 1분기 재무제표 점검 보고	보고
				내부감사 업무보고	보고
				외부감사 진행상황 보고	보고

[표9-②-3]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2019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고
	개최일자	‘19.01.29	‘19.02.20	‘19.04.23	‘19.07.22	‘19.10.22	‘19.11.27	
사외	황성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박준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19.03.15 퇴임
	한근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창양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9.03.15 선임

[2020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개최일자	'20.01.30	'20.02.26	'20.04.22
사외	황성식	출석	출석	출석
	한근태	출석	출석	출석
	이창양	출석	출석	출석

[표9-②-4]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19	2018	2017
사외	황성식	100	100	100	100
	박준	100	100	100	100
	한근태	100	100	100	100
	이창양	100	100	-	-

□ 감사절차, 회의록, 감사록 기록,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 관련 내부 규정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감사규정을 통하여 감사 계획의 수립/변경, 감사 실시 통보, 감사의 연기 요청,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준비, 감사 실시의 기본 원칙, 감사 결과의 보고/통보, 징계 건의, 시정 지시, 감사 결과의 공개 등 감사 절차, 감사 자료의 관리 및 보존,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 관리,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나. 성실한 감사 관련 업무 수행

이상과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한 감사, 내부감사 업무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019년 6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적이고 충분한 회의 개최, 감사위원회 회의 전원 출석 및 충실한 심의 진행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정책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기준·절차

당사는 2019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0년~2022년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능력, 내부통제 개선 및 리스크 관리,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징계 실적, 감사팀 구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받았으며, 2019년 11월 감사위원회에서 당사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권한, 외부감사인과의 각종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및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독립성과 적격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외감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횟수 및 각 회의에서의 논의사항(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평가, 감사계획, 감사시간 등)

2019년 11월 27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2022년 3개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외부감사인 선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감사위원들은 감사위원회 규정 및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해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전기감사 의견진술 내용과 충실성 등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및 내용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2019년 감사위원회는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당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대면회의 횟수 및 주요 발언 내용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 제공 여부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부 비감사업무 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감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19년 회계연도 중 수행한 비감사 업무 내용 및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백만 원)
2019년	2019년 7월	Comfort Letter 발행	40일	120

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정책 및 절차의 마련

당사는 법령에 부합하는 내부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 사전/사후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과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2)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소통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

□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역은 아래 “[표 10-②-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 개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협의 내용

(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 평가 방법 등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표10-②-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 개최 내역

회차	방식	개최일자	참석자	회의 사항
1차	대면회의	2019.01.29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18년 기말감사업무 경과 2. 18년 주요 감사업무 수행 현황 3. 18년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수행된 절차
2차	대면회의	2019.04.23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19년 감사업무계획 2. 19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3. 19년 예상 핵심감사사항 4. 감독기관 중점 감리사항 및 도입예정 기준서
3차	대면회의	2019.07.22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19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2. 19년 재무보고내부통제 테스트 계획 3. 감독기관 동향 및 ‘리스’기준서의 최근 논의사항 업데이트
4차	대면회의	2019.10.22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19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2. 19년 재무보고내부통제 중간테스트 결과 3. 19년 핵심감사사항 및 계획된 감사절차
1차	대면회의	2020.01.30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19년 기말감사업무 경과 2. 19년 주요 감사업무 수행 현황 3. 19년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수행된 절차 4. 감독기관 중점 감리사항(2020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2차	대면회의	2020.04.22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20년 감사업무계획 2. 20년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3. 20년 예상 핵심감사사항 4. 감독기관 중점 감리사항 및 도입예정 기준서

□ 외부감사인인 감사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의 내부감사기구 통보 절차,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

당사 감사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매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내부통제 점검 평가 결과, 주요 법령 규제사항 동향 및 이슈 사항 등을 보고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1월 30일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2019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2020년 4월 22일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2020 사업년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감사 전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출 여부

당사는 외감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감사 전 재무제표 및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일인 2020년 3월20일보다 6주전인 2020년 1월 20일에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 의사소통 실시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상호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기타 주요 사항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방침 및 전략을 소개함은 물론 매년 지배구조, 정도경영, 동반성장, 안전보건, 환경에너지, 사회공헌 등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게재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한, 당사는 LG WAY에 따라,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실력을 통하여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도경영을 통하여 초우량기업으로 영속 발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LG윤리규범에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LG윤리규범\]](#)

참고로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 관련하여 공적인 제재를 부과받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O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V	주주총회 3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함	
	② 전자투표 실시		V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검토 중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V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기 주주총회를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나, 과거엔 집중일 개최 이력 없음	
	④ 배당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연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V	이사회 배당 결정 후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향후 배당 정책을 검토하겠음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 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V		해당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V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V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음	
	⑧ 집중투표제 선택		V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해 집중투표제와 유사한 기능 수행 중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V		해당 정책을 수립·운영 중이며, 실제 부적합 임원 선임 사실 없음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V		당사 및 계열회사 포함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V		연 1회 이상 실시('19.09.02 실시)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V	하기 각주1) 참조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V		황성식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77년~'04년 근무)]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V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19.01.29, '19.04.23, '19.07.22, '19.10.22)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V		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에 반영	

1) 당사의 경우,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으로 CEO 산하에 경영진단담당이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인 경영진단담당은 공인회계사, 회계실무경력자로 구성된 내부회계진단팀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실질적인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구조상 CEO 산하에 있어 인사권 및 예산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으므로, X로 표기하였습니다.